

의안번호	2213927
의 퇴 인	정을호 의원
회 답 일	2026.01.05.
추 계 번호	25C584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사업)	(제1항) 제7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학혁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고등교육기관 재정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3.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조사, 재정배분, 성과관리 및 각종 실태점검 4. 고등교육기관 재정정보 집계 및 관리,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 5. 고등교육기관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6. 고등교육기관 경영관리 혁신을 위한 정보화 등 자원관리 지원 7. 고등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고등교육기관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9.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 그 밖에 고등교육기관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의무규정
2	안 제8조 (임원)	(제1항)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의무규정
3	안 제12조 (이사회)	(제1항)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의무규정
4	안 제17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7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21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5	안 제18조 (대학혁신진흥기 금의 설치)	(제1항)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학혁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의무규정
		(제2항) 기금은 대학혁신지원계정 및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6	안 제19조 (기금의 조성)	(제1항) 대학혁신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3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의무규정
		(제2항) 구조개선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제3항)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20조 (기금의 사용)	(제1항) 대학혁신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 · 기자재의 개수(改修)· 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3.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학기관과 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대학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항) 구조개선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사업 2. 사학기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법인의 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사학기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법인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사업	의무규정
8	안 제2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의무규정
9	안 제29조 (차입)	(제1항)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채량규정
10	안 제30조 (대학혁신진흥채권의 발행)	(제1항)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채량규정
11	안 제31조 (이자차액의 보전)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용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32조 (출연금)	(제1항)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 (사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 (임원) 안 제12조 (이사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7조 (국·공유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18조 (대학혁신진흥기 금의 설치) 안 제19조 (기금의 조성) 안 제20조 (기금의 사용) 안 제23조 (기금의 운용·관 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29조 (차입) 안 제30조 (대학혁신진흥채 권의 발행) 안 제31조 (이자차액의 보전) 안 제32조 (출연금)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사학재단”)을 한국대학혁신재단(이하 “혁신재단”)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사학재단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재정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25년 1,217억 8,700만원 규모의 사학진흥기금을 운용함
 - * [참고자료 1] 한국사학진흥재단 임직원 현황
 - * [참고자료 2] 2025회계연도 한국사학진흥재단 수입·지출 현황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학재단 개편 및 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
 - (안 제 7조) 개정안에 따라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편성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확대·신규 편성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함
 - (안 제8조 및 제12조) 개정안은 혁신재단의 임원과 이사회 구성을 규정하나,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혁신재단과 사학재단 간 운영 경비 차액으로 향후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산출이 어려움
 - 안 제8조, 제12조의 조문이 각각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제7조, 제11조와 일치하여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사학재단에 대한 출연이 강사 처우개선, 병원 인프라 확충 등 특정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 비용은 자체 수입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음
 - (안 제17조) 개정안이 시행되어 혁신재단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공유재산 운용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무상대부될 재산 및 사용료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18조 내지 제23조) 개정안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을 대학혁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하는 경우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은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됨
 - 개정안은 사학지원계정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을 청산지원계정에 이관하여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기존 청산지원계정을 대학혁신지원계정으로 개편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이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대학혁신지원계정으로 수행할 사업의 구체사항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이를 산출하기 어려움
 - * [참고자료 3]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개정안 조문 비교
- (안 제29조 내지 제32조) 개정안이 시행되어 대학혁신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 및 채권 발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차입 규모, 이자율 등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
- 참고로, '25년 기준 사학진흥기금은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차입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한국사학진흥재단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기관장	일반	무기계약직	기간제	소속 외 인력	
정원	1	116	13	—	—	130
현원	1	110	9	11	2	132.5

주: 1. '25년 3분기 기준

2.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원이 존재하지 않음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참고자료 2] 2025회계연도 한국사학진흥재단 수입·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수입	○ 자체수입	176,255
	－ 융자이자수입	32,562
	－ 예금이자수입	2,138
	－ 융자원금수입	138,059
	－ 수입대체경비수입	1,099
	－ 연체료 수입 등	2,397
	○ 정부내부수입(차입금)	357,264
	－ 공자기금예수금	172,840
	－ 주택도시기금예수금	62,637
	－ 일반회계 전입금	121,787
	○ 여유자금회수(이월)	31,52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1,520
합 계		565,039
지출	○ 사 업 비	369,845
	－ 학교경영 지원사업	1,099
	－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융자사업	218,063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29,737
	－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200
	－ 정보시스템 운영	696
	－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융자)	120,050
	○ 기금운영비	9,729
	－ 인건비	6,197
	－ 기타경비(운영비)	3,502
	－ 대학재정분석	30
	○ 정부내부지출	162,568
	－ 공자기금(총괄) 원금상환	123,454
	－ 주택도시기금 원금상환	17,846
	－ 공자기금(총괄) 이자상환	8,768
	－ 주택도시기금 이자상환	12,500
	○ 여유자금운용(차년이월)	22,897
	－ 통화금융기관예치	22,897

주: '25년 3분기 기준 자료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고자료 3]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과 개정안 조문 비교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정안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의2. 삭제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20조(기금의 사용) ① 대학혁신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학기관과 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대학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조개선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사업 2. 사학기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법인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사학기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법인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사업